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로, “시행규칙 제38”을 “시행규칙 제18”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 등)”을 “(모범업소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른 우수업소 또는”을 “다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은 우수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하며, 영 제2조”를 “영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따른다”를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해당 업소에서 생산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우수업소 로고를 표시하게 하거나 해당”을 “모범업소로 지정된”으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

·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우수업소 지정증 또는 모범업소”를 “모범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우수업소 표지판 또는 모범업소”를 “모범업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한 우수업소 또는”을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취소된 우수업소 또는”을 “취소된”으로 한다.

별표 19의 제목 중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 (제61조제2항 관련)”을 “모범업소의 지정기준 (제61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23 Ⅱ 제1호제8호 위반사항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Ⅱ 제2호제7호 위반사항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Ⅱ 제3호제7호 위반사항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법 제22조제1항(법 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7. 법 제22조제1항(법 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7. 법 제22조제1항(법 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별표 23 Ⅱ 제3호제1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 우 포함)를 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	------------	-------------	-------------

별표 23 Ⅲ 제3호라목 중 “제11호나목·다목 또는 라목”을 “제11호나목
·다목”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신청인 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3
호”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로, “시행규칙 제38”을
“시행규칙 제18”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3
호라목 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① (생략)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 -- <u>시행규칙 제18</u> ----- ----- ----- ----- ----- -----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우수업소 · 모범업소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u>따</u>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① ----- <u>따</u> -----

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행한다.

1. 우수업소의 지정: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
수 · 구청장

2. (생략)

②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
· 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은 우수업소
와 일반업소로 구분하며, 영 제
2조의 집단급식소 및 영 제21조
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은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한
다. 이 경우 그 등급 결정의 기
준은 별표 19의 우수업소·모범
업소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
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해당 업
소에서 생산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정하는 우수업소 로고를 표

— — ●

1. (삭 제)

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조

모범업소의 지정

기준에 따른다.

③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모범업소로 지정된 -----

이하에 하거나 해당 업소의 외
부 또는 내부에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모
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
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법 제22
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우수업소 지정증 또는 모범 업소 지정증의 회수

2. 우수업소 표지판 또는 모범 업소 표지판의 회수

3. 그 밖에 해당 업소에 대한 우
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
이 취소된 우수업소 또는 모범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
·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④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1. 모범업소 -----

2. 모범업소 -----

3. ----- 대한 -----

⑤ -----
 -- 취소된 -----

업소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없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 ----- ----- ----- ----- -----.
--	---